

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489
------	-----

2019. 4. 25.
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5일, 김달호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4.25) 상정, 검토보고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김달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“누구든지 장애

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
- 또한,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”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아울러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의 경우에도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고 된 부분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로 개정('16.2.3)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라는 문구를 ‘장애가 ‘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‘장애’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,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(안 제6조제1호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과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의 취지에 맞춰 위원 해촉 사유에서 ‘심신 장애’라는 표현을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‘장애’ 해촉사유의 개선(안 제6조제1호)

- 개정안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하고 있음.
- 이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1)과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²⁾(Convention on the Rights of

1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)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 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) 나.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

Persons with Disabilities)”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- 정부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 있음³⁾.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‘장애’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[참고자료1].
-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1. 국가의 공적·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
2. (생략)

3) 인권위원이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’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는 제8조가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‘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’로 개정하였음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달호, 김화숙, 이병도,
신정호, 임종국, 권수정,
이성배, 권영희, 박기재,
박순규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- 또한,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”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아울러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의 경우에도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고 된 부분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

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로 개정(‘16.2.3)한 바 있음.

-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라는 문구는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‘장애’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,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(안 제6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유엔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

▣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▣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
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

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

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참여)

나.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
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로
하며, 같은 조제3호 중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
하고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3. 제5조제1항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</u>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	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5조제1항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</u>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